

대학원 국악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국악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국악학과 소속 교수들은 국악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논문지도

제4조 (지도교수의 선정)

- 논문지도 교수 선정은 1기말(기간내)에 신청가능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연구지도과목(세미나)을 지도하게 된다.
- 1기 중간 전 신청할 교수님과 미리 상의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
- 시기는 학사일정과 병행하여 주임교수가 지정한다.
- 모든 교과과정의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가 있는 강사로 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 전공별로 위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 전공악기의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
- 논문 지도교수 변경 :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을 적용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5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 조건 없이 수업연한 중 수강했던 과목에서 석사 2과목, 박사 4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제6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장애,외국인)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 응시자격 : 외국어 자격시험에 통과한자, 전공학점을 취득한자
- 수업연한 중 수강했던 과목 중 석사 2과목 박사 4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불합격 시 횡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가능함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과정	내 국 인		외 국 인	
	선 택 과목수	선 택 과 목 명	선 택 과목수	선 택 과 목 명
석사	1	영어, 중국어	1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국어, 노어, 서반아어
박사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영어, 독어, 불어, 일어, 한국어, 노어, 서반아어

- 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합학력시험, 논문을 할 수 없다.
- 석·박사과정 상관없이 2학기부터 신청 및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시 재 응시 할 수 있다.
- 본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대체특강을 수강 후 외국어 자격시험을 응시 할 수도 있다.

제5장 학위과정

제8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1안 학위작품 : 연주(논문대체)

2안 연구보고서(논문대체) : 40page 이상의 논문양식을 갖춘다.

3안 석사학위 취득방법인 논문원칙을 유지한다.

→ 위 세가지 방안을 다 수용한다.

	1기	2기	3기	4기	석사학위과정
1안	전공	전공	전공	전공, 종합학력자격시험	학위작품 : 연주
2안					연구보고서
3안					논문

제9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가능하다.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0조 (논문심사위원)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신청자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 3인, 박사5인 [교내 3인(전임교원, 특별교원), 교외 2인]을 추천한다.

제11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예심, 본심을 시행한다.

제12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3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